

미연방 델라웨어 주
파산법원

사건명:)
FOREVER 21, INC., 외,¹) 11장
채무자) 사건번호 제19-12122 (KG)
) (병합 관리)
)

행정 청구 증명 신고 마감일 고지

수신: 다음의 채무자들에게 대한 행정 청구를 소유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채무자	사건번호
Forever 21, Inc.	19-12122
Alameda Holdings, LLC	19-12123
Forever 21 International Holdings, Inc	19-12124
Forever 21 Logistics, LLC	19-12125
Forever 21 Real Estate Holdings, LLC	19-12126
Forever 21 Retail, Inc.	19-12127
Innovative Brand Partners, LLC	19-12128
Riley Rose, LLC	19-12129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십시오.

2019년 9월 29일(“파산신청일”), Forever 21, Inc. 및 위 언급된 채무자들 및 기존경영자관리인(집합적으로 “채무자들”이라 함)은 미국법(“파산법”) 제11편 챕터 11(Chapter 11) 에 의거하여 델라웨어 주 미국파산법원 (본 “법원”)에 자발적인 구제 청원서를 신고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5일 본 법원은 [도CKET 번호 1094]명령(“행정 청구신고 절차 명령”)²으로 채무자들에 대한 행정 비용 청구(“행정 청구”)를 보유한 당사자가 청구 증명서(“행정 청구 증명서”)를 신고해야 하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¹ 본 제11장 사건의 채무자들과 각 채무자의 연방 납세고유번호 뒤 네 자리 수는 Forever 21, Inc. (4795); Alameda Holdings, LLC (2379); Forever 21 International Holdings, Inc. (4904); Forever 21 Logistics, LLC (1956); Forever 21 Real Estate Holdings, LLC (4224); Forever 21 Retail, Inc. (7150); Innovative Brand Partners, LLC (7248); 및 Riley Rose, LLC (6928)이다. 채무자의 송달 주소는 3880 N. Mission Road, Los Angeles, California 90031이다.

² 대문자로 찍어 있으나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은 행정 청구 절차 명령에 명시된 의미를 지닙니다.

귀하의 편의를 위해, 이 고지서(이 "고지")에는 행정 청구신고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고지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단체"라는 용어는 파산법 제101(15)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지며, 모든 개인, 재단, 신탁, 정부 기관 및 텔라웨어 지구의 미국 자산관리기관을 포함합니다. 또한, "개인"과 "정부 기관"이라는 용어는 각각 파산법 제101(41)항과 101(27)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본 고지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청구"라는 용어는 채무자들 또는 그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파산법 제101(5)항에 따라 다음을 의미합니다. (a) 판결, 청산, 미청산, 고정, 우발, 만기, 분쟁, 논란, 합병, 공평, 담보 또는 무담보로 인한 권리에 대한 지불 권한; 또는 (b) 이행 위반으로 인해 지불금 권리가 발생할 시, 판결, 청산, 미청산, 고정, 우발, 만기, 분쟁, 논란, 합병, 공평, 담보 또는 무담보로 인한 공정한 구제책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행 위반에 대한 공정한 구제책.

I. 행정 청구 신고 마감일(Bar Date).

행정 청구 절차 명령에 따라 2020년 6월 1일 오후 4시 동부표준시가 행정 청구 증명서 신고일("행정 청구 신고 마감일")로 정해졌으며, 2019년 9월 29일과 동부표준시 2020년 3월 5일 오후 11시59분 사이에 이들 챕터 11의 건의 파산법 503항에서 발생한 모든 청구에 근거합니다.

II. 행정 청구 증명서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당사자.

본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3월 5일 또는 오후 11시 59분 동부 표준시에 행정 청구 증명서가 있는 모든 당사자는 행정 청구신고 마감일(Bar Date). 또는 그 이전에 행정 청구 증명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III. 행정 청구 증명서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당사자들.

특정 당사자들은 행정 청구 증명서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법원은, 추후 채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종류의 청구에 대한 행정 청구 증명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마감일을 정하기 위해 한 가지 이상의 개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본 법원이 그러한 명령을 내릴 경우 귀하는 그에 관련된 고지를 받게 됩니다. 행정 청구 신고 마감일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청구서를 보유한 다음 단체들은 행정 청구 증명서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a.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전에 청구신고가 허용되었고, 채무자들에 의해 이행된 개인 또는 단체;
- b. 파산법 503 (b)(9)항에 따라, 채권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 법원에 따른 특정 마감일을 정하는 기존 명령에 따라 청구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켓 넘버(Docket No.) 396] ("절차개시전 청구 마감일 명령(Prepetition Bar Date Order)");

- c. 파산법에 따라 또는 본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클레임 전액을 지불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
- d. 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 모든 채무자;
- e. 손해배상, 기부 또는 상환에 근거한 청구에 대한 채무자의 현재 또는 전 임원, 이사 또는 직원;
- f. 본 법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청구서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로서, *명령(I) 보유한 전문적 직원들을 위한 중간 임금 및 경비 환급 절차의 수립 및 (II) 구제에 관련한 보상*[도CKET 넘버(Docket No.) 339]에 따른 전문적 직원들의 상환 요청을 포함하며, 또한,
- g. 절차개시 후 발생한 세금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정부 기관.

IV. 청구 증명서 신고 안내.

각 청구 증명서의 신고 및 준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 a. **목차**, 각 행정 청구증명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i)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ii) 미국 달러로 표시된 청구 금액을 포함하고; (iii) 채무자들 또는 공식 양식 410에서 제공한 행정 청구 증명서 양식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며; (iv)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b. **전자 서명이 허용됩니다.** 청구자 또는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이 전자 서명한 행정 청구 증명은 청구 행정 목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발송된 행정 청구 증명서 또는 행정 청구 증명서 사본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c. **채무자 단체의 식별.** 각 행정 청구 증명서에는 개별 채무자의 케이스 넘버를 포함하여, 청구가 제기된 채무자가 명확하게 식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동 행정 케이스 번호에 따른, 또는 특정 채무자를 식별함이 없이 신고된 행정 청구 증명서는 Forever 21, Inc.에 대해서만 청구 소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d. **다수 채무자 단체들에 대한 청구.** 각 행정 청구 증명서에는 **단 하나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서를 명시해야 하며, 청구 증명서가 청구된 채무자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채무자가 행정 청구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Forever 21, Inc.에 대해서만 제기된 것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 e. **증빙 서류.** 각 행정 청구 증명서에는 파산 규칙 3001(c) 및 3001(d)에 의해 고려되는 증빙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의 양이 방대한 경우 그 문서의 요약이 대신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자들이 청구에 대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채권자는 14일 이내에 그 요청을 준수해야 한다는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 f. **적시 서비스.** 각 행정 청구 증명서는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되어야 하며, 이는 채무자들의 고지 및 청구 대리인인 Prime Clerk LLC (“Prime Clerk”)가 행정 청구 신고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실제로 행정 청구 증명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i) Prime Clerk 웹 사이트의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을 통해 전자적으로, 혹은 (ii) U.S. Mail이나 다른 직접배송방식을 사용하여 가능하고, 청구 증명서에 직접 서명하여 다음의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Forever 21, Inc. Claims Processing Center
c/o Prime Clerk LLC
850 Third Avenue, Suite 412
Brooklyn, New York 11232

팩스나 전자 우편으로 신고된 청구 증명서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g. **서비스 수령.** 비전자적 수단을 통해 행정 청구 증명서를 신고하는 청구인이 자신의 행정 청구 증명서가 Prime Clerk에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행정 청구 증명서 양식 사본 외에(Prime Clerk에 보낸 행정 청구 증명서 양식의 원본에 더하여) 반드시 본인의 주소와 우표가 포함된 봉투를 제출하십시오.

V. 행정채권신고를 적시에 신고하지 못한 결과.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행정 청구 신고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행정 청구 절차 명령에 따라 행정 청구 증명을 신고해야 하지만 실패한 단체의 경우, 본 챕터 11 건에 대한 이러한 청구권 주장(또는 이에 대한 행정 청구 증명서 신고)이 영원히 금지, 중지되고 금하여 집니다.

행정 청구 신고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행정 청구절차 명령에 따라서 행정 청구 증명서를 신고해야 하지만 실패한 단체의 경우, 이에 반대되는 법원의 추가 명령이 없는 한, 행정 청구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제출한 계획에 반대하거나, 그러한 청구에 대한 본 챕터 11의 배포에 참여하거나, 그러한 청구에 관한 추가 고지를 받는것이 금지됩니다.

VI. 권리 보유.

본 고지에 포함된 어떤 부분도 채무자들의 분쟁권리의 포기로 해석되거나, 청구의 성격, 금액, 책임 또는 분류에 대한 상쇄 또는 방어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 되어서는 안 됩니다.

VII. 추가 정보.

행정 청구 절차 명령 사본 및 다른 본 챕터 11 케이스 관련 정보는 검토를 위해 채무자들의 구조조정 웹사이트인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 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챕터 11 케이스와 행정 청구 절차 명령 및 기타 서류는 본 법원의 웹사이트 <http://www.deb.uscourts.gov>에서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에 접근하려면 법원 전자 기록에 대한 법원의 공개 액세스(“PACER”)에 대한 로그인 아이디 및 암호가 필요하며, 이는 <http://www.pacer.psc.uscourts.gov>의 PACER 서비스 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청구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 연락처로 채무자 구조조정 핫라인에 문의하십시오. (877) 510-9565 (수신자부담) or (917) 947-5437 (인터넷서널).

이 고지사항과 여기에 포함된 중국어, 광둥어 및 한국어 지침에 액세스하려면 Prime Clerk 웹 사이트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를 방문하십시오.

如需查阅本通知和此处所列说明的中文、广东话和韩文版本，请访问Prime Clerk的网站：<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

如需查閱本通知及此處所列說明的中文、廣東話和韓文版本，請查看Prime Clerk的網站：<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

이 고지와 고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시사항을 중국어, 광둥어 및 한국어로 보시려면 Prime Clerk 웹 사이트 (<https://cases.primeclerk.com/Forever21>) 를 방문하십시오

본 채무자들에게 청구가 가능한 채무자인 경우,
이 고지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항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다음을 신고할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 청구 증명서.

날짜: 2020년 3월 26일
Wilmington, Delaware

/s/ Laura Davis Jones

Laura Davis Jones (DE 바 번호. 2436)
James E. O'Neill (DE 바 번호. 4042)
Timothy P. Cairns (DE Bar No. 4228)
PACHULSKI STANG ZIEHL & JONES LLP
919 North Market Street, 17th Floor
P.O. Box 8705
Wilmington, Delaware 19899-8705 (Courier 19801)
전화: (302) 652-4100
팩스: (302) 652-4400
이메일: ljones@pszjlaw.com
joneill@pszjlaw.com
tcairns@pszjlaw.com

-또한-

Joshua A. Sussberg, P.C. (*pro hac vice* 허가됨)
Aparna Yenamandra (*pro hac vice* 허가됨)
KIRKLAND & ELLIS LLP
KIRKLAND & ELLIS INTERNATIONAL LLP
601 Lexington Avenue
New York, New York 10022
전화: (212) 446-4800
팩스: (212) 446-4900
이메일: jsussberg@kirkland.com
aparna.yenamandra@kirkland.com

-또한-

Anup Sathy, P.C. (*pro hac vice* 허가됨)
KIRKLAND & ELLIS LLP
KIRKLAND & ELLIS INTERNATIONAL LLP
300 North LaSalle Street
Chicago, Illinois 60654
전화: (312) 862-2000
팩스: (312) 862-2200
이메일: asathy@kirkland.com

채무자들과 기존경영자관리인에 대한 공동 변호인